

전략연구 2019-18

충청남도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김진영·최웅선·성태규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2) 연구의 목적 | 3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 1) 연구의 범위 | 4 |
| 2) 연구의 방법 | 4 |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동향 | 7 |
| 1.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 | 7 |
| 2. 중앙정부의 정책 | 11 |
|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11 |
|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 13 |
| 3.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 15 |
| 제3장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연구동향 | 19 |
| 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19 |
| 2.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현황 및 경제활동 현황 | 21 |
| 1) 인구 현황 | 21 |
| 2)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이용자 취업 현황 | 25 |
| 3.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 26 |
| 제4장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관한 인식조사와 쟁점 | 31 |
| 1. 표본의 특성 | 31 |
| 2. 취업 전 단계 | 34 |
| 3. 취업 단계 | 40 |
| 4. 퇴직 후 단계 | 42 |

| | |
|--------------------------------------|----|
| 제5장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 취업정책 추진방안 | 43 |
| 1.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향성 | 43 |
| 2. 추진전략 | 44 |
| 1) 단계별 지원 정책 마련 | 44 |
| 2) 기본적 교육 강화 및 보육제도의 개선 | 45 |
| 3)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전문역량 강화 | 46 |
| 참고문헌 | 47 |

표 목차

| | |
|--|----|
| 〈표 2-1〉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과제별 예산 및 과제수 | 17 |
| 〈표 2-2〉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5대 정책목표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 18 |
| 〈표 3-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임금수준 | 20 |
| 〈표 3-2〉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21 |
| 〈표 3-3〉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 22 |
| 〈표 3-4〉 시도별 외국인주민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 23 |
| 〈표 3-5〉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 현황 | 23 |
| 〈표 3-6〉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 24 |
| 〈표 3-7〉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이용자 수 및 취업자 수 | 25 |
| 〈표 3-8〉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취업자의 직업별·종사상 지위 현황 | 26 |
| 〈표 3-9〉 결혼이민여성의 일 지향성 유형 | 27 |
| 〈표 3-10〉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직종별 분포 | 29 |
| 〈표 4-1〉 면접 대상자 현황 | 33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체계도 | 12 |
| 〈그림 2-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체계도 | 14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이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한국사회 적응, 가족 생활, 자녀에 대한 교육, 보건의료,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위하여 언어적응 및 문화적응,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취업지원은 미흡한 실정(박미숙 외, 2014)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취업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수행 중에 있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된 사업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으로서(여성가족부, 2019), 취업지원정책을 포함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혜원, 2008).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은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 가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가구

의 총 가구소득은 소득분위 하위 2~3분위에 속하여,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경제적 문제는 미래에 보다 더 심각한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연령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이규용 외, 2011).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은 국내 일반여성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지원을 국내 일반여성의 경력단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성향숙, 2012). 결혼이주여성과 국내 일반여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 및 조건이 다름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노동의 공급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대상을 어느 정도 인적자본이 갖추어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관련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추진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①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심인선, 2010; 김병숙 외, 2010; 최승호, 2010; 김정희·최은수, 2012), ②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이태정 외, 2013; 박재규, 2013), ③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경험 및 준비·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이정희·이수분, 2013; 공수연·양성은, 2014, 박미숙 외, 2014, 김용현, 2017)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의의는 있으나, 연구의 초점이 ① 노동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점, ② 양적연구·통계조사 연구의 경우, 실질적인 취업경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 질적연구의 경우, 피면접자의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취약계층보다는 어느 정도 인적자본이 갖추어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충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우복남·배지연(2016)의 연구에

서는 현재 직업이 있는 충남 결혼 이주여성들의 약 절반 정도(47.5%)가 단순직종(단순 노동 17.8%, 서비스업 15.5%, 농림어업 14.2%)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직업이 있는 충남 결혼이주 여성의 절반 정도(46.5%)는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취업을 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지원 과제를 도출(경제활동 지원 방안)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반적인 정책지원방안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농촌지역의 특징(충청남도의 특징)을 반영하는 정책적 지원과제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분석을 함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통계에서 소홀이 다루어진 현실적인 내용을 발굴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을 한다. 본 연구의 관점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방안 연구에 있는 만큼, 취업을 한 결혼이주여성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의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및 다문화지원센터의 관계자들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및 경제적 환경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이 다르므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도시지역인 천안시와 농촌지역인 홍성군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시지역으로서 이곳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른 취업의 양상 및 욕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농촌지역 중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동시에 농촌지역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 연구의 방법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① 선행 연구 검토, ② 관련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③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동향 및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법무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계획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과제 및 정책들을 분석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활동을 직접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및 경제적활동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이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의 객관화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전문가와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동향

1.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

다문화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Castles and Miller(2003)는 수용국이 이주노동자 및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유형에 따라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차별적 배제모형은 수용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영역에서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을 말한다(박대식, 2008). 즉, 특정 자격을 갖춘 일부 이주노동자나 이주자에 대하여는 자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 외의 이주노동자나 이주자에게는 일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배제모형 아래에서는 이주노동자나 이주자를 일부 직종의 한정된 영역에서만 받아들일 뿐, 복지혜택,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서 받아들이지는 않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유길상 외, 2005).

이는 이주집단에 따라서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접근으로, 대부분의 이주민은 ‘사회의 일부’가 아닌 ‘손님’으로 여기고 정책대상에서 통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김태원·김유리, 2011). 반면에 엄격한 조건을 통해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민자는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내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다(임형백 외, 2009).

이러한 차별적 배제 모형은 독일과 한국, 일본 등의 국가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혈통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구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 결과 외국인의 대량유입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이러한 차별·배제모형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신에 자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투자자 중심의 선별적 이민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둘째, 동화모형은 이민자 집단의 고유문화가 보존되지 않고, 수용국의 주류사회로 용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민자에게 문화적동화를 대가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하는 정책을 말한다. 동화주의에서 이민자는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설동훈 외, 2006). 즉,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주류사회는 자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다(임형백, 2009). 따라서 국가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언어 및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돋고, 이민자의 자녀가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설동훈 외, 2006).

셋째, 다문화모형은 수용국이 이민자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수용국은 이민자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공유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수용국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한다¹⁾). 즉, 소수민족이나 이민집단이 주류사회와 동일시 혹은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가 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의 공존을 정책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평등성, 소수 민족 집단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책을 실시한다(조세현, 2012).

다문화주의 모형은 다시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구분할 수 있다(설동훈 회, 2006).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제조건과 실현방법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은 하지만,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평등하게 인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양소영·여병창, 2011). 따라서 다문화주의에서는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사회 및 이민자를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게 된다.

1)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Salad Bowl model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하여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에 의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도 서로 다른 성향을 띄게 된다. 문화다원주의에서 국가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일관하게 되고, 다문화주의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설동훈 외, 2006).

수용국이 이주노동자 및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유형에 대한 Castles and Miller(2003)의 구분은 다분히 이념형(ideal type)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 다문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선별적·선택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또한 차별적 배제 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의 세 모형은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원숙연, 2012).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Castles and Miller(2003)의 어떠한 모형에 따르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Castles and Miller(2003)는 한국을 독일, 싱가폴, 태국, 일본 등과 함께 차별적 배제모형의 범주에 넣고 있다. 김태원·김유리(2011) 역시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국을 차별적 배제모델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그 근거로서 혈통에 의한 국적여부와 귀화 조건 및 절차의 까다로움, 대부분의 이주민을 사회의 일부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하여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적 배제모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공은숙(2009)은 ‘다문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이 다문화모형에 의하여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동화모형에 의하여 추진이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다문화와 관련된 법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이 동화모형을 핵심으로 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가정책 수준이 아닌 정책영역별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는 이영범·남승연(2011)과 정장엽·정순관(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영범·남승연(2011)은 영역별로 정책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중 노동시장

은 차별배제주의가 나타나고 있고, 사회정책영역에서는 동화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문화정책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장엽·정순관(2014)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내용이 동화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다문화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추진과제에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영역별로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영역별로 살펴보면 이주적응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고용관련 다문화정책분야에서는 다문화주의 과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련 다문화정책분야의 경우에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주의 과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관련 다문화정책분야의 경우에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동화주의 과제의 추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관련 다문화정책에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주의 과제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는 동화주의 과제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 두 기본계획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중앙정부의 정책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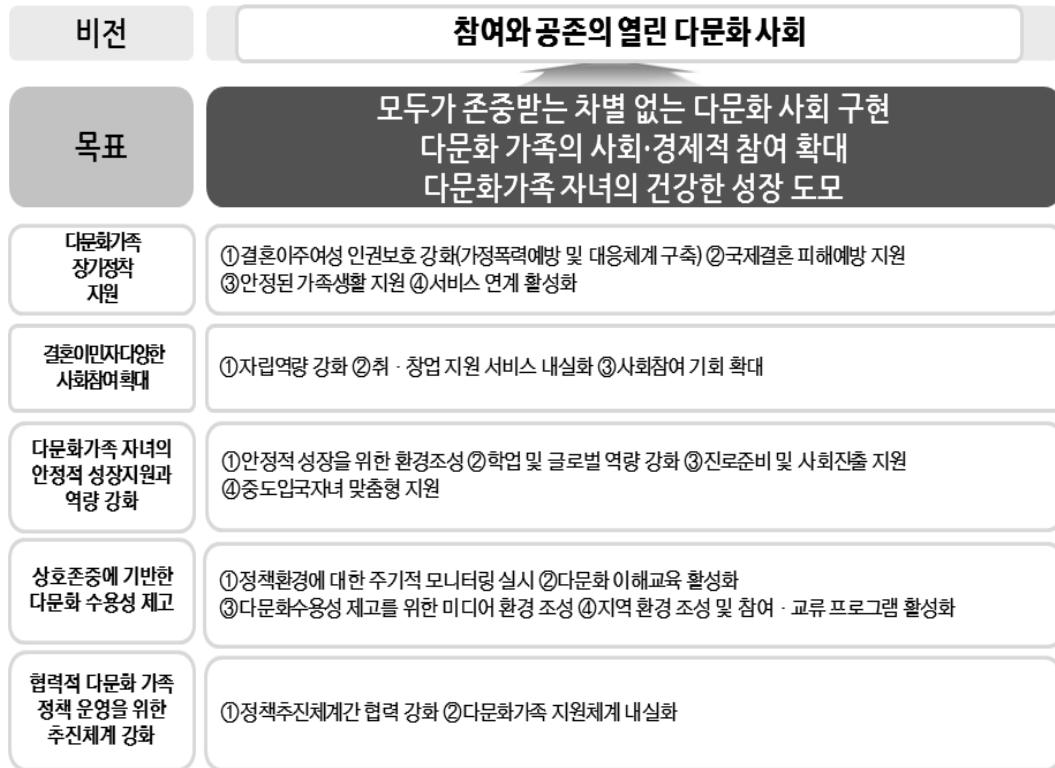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과 발전시책을 담아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2018~2022)은 기존의 정책들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초기 적응 지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정착이 높아지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 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획수립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각 부처는 다문화가 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개별 정책과제별로 참여를 하고 있다.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①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②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정 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개 대과제, 17개 중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기존의 1·2차 기본계획과 다른 점은 이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다문화가족 부부갈등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감안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취·창업 지원이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정 책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의 자율 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²⁾.

2)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체계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체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이주여성의 경제적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과 제 중 “자립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에 해당한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립역량 강화의 경우, ①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②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 ③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④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⑤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 등의 정책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는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 ②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③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 ④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⑤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 ⑥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취·창업 지원 등을 하위 정책과제로 구성하고 있다.

정책과제들은 많은 경우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지만, 정책과제에 따라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의 경우,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소관부처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정책이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부서가 협력을 이루어 수행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 및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³⁾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우수 외국인재 유치가 미흡하고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 거주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에 대해 우려 제기,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그 이외의 재한외국인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 부족,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 부족,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부족 등 기존계획 및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국민공감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 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⑤ ‘협력에

3)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2-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체계도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이민의 양적확대 중심의 개방적 이민 허용이었다고 한다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추상적 선언적 인권 응호에 있다면, 본 계획은 구체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의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외국인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축산어업, 예술홍행분야 등 취약한 상황에 높여있는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본 계획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협업을 증진하고, 이민관련 통계나 연구기반이 부족에 대해 이민기록정보원 등 기반을 확충하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이민관련 법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일배움카드⁴⁾를 발급하는 등 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농축산업, 어업 등 소수업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직장생활 고충상담 확대, 업종별 교재 마련 및 이러닝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접근성 강화하고, 농촌 결혼 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이해를 증진하여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본 절에서는 국가계획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수립·집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시행계획인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시행계획(이하 2019년도 시행계획)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를 따르고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자립역량 강화, 취·창업 서비스의 내실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환경

4)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세부과제수는 총 78개이고, 소요예산은 1,754.3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제수와 소요예산을 5대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과제수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영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영역에서 각각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영역의 경우 16.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경제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정책목표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영역은 과제수에 있어서는 비중이 높으나, 소요예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지원정책의 세부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5개 과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1개 과제),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1개 과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1개 과제), 결혼이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1개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과제의 수와 예산이 더욱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과제별 예산 및 과제수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번호 | 세부과제명 | 소요예산(백만원) | | 과제수 (개) | |
|---------------------------------------|--------------------------|-----------|-----|------------|--|
| | | '19년 | 비고 | | |
| 합계 | | 1,754.36 | | 78 | |
|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 | 554.2 | | 21 | |
| 1-1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41 | | 2 | |
| 1-2 |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 - | 비예산 | 4 | |
| 1-3 |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 397.4 | | 15 | |
| 1-4 | 서비스 연계 활성화 | 115.8 | | 3 | |
|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 281.36 | | 21 | |
| 2-1 | 자립역량 강화 | 89 | | 6 | |
| 2-2 |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 154.9 | | 8 | |
| 2-3 | 사회참여 확대 | 37.46 | | 7 | |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 | 557.5 | | 18 | |
| 3-1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 67 | | 4 | |
| 3-2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320.5 | | 9 | |
| 3-3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13 | | 3 | |
| 3-4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확대 | 157 | | 2 | |
|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 | 261.9 | | 13 | |
| 4-1 |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 - | | - | |
| 4-2 |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 90 | | 5 | |
| 4-3 |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 20 | | 1 | |
| 4-4 |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151.9 | | 7 | |
|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 99.4 | | 5 | |
| 5-1 |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 52.4 | | 2 | |
| 5-2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 47 | | 3 | |

〈표 2-2〉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5대 정책목표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단위 : 개, 백만원)

| | 과제수 | (비율) | 소요예산 | (비율) |
|-----------------------------|-----|-------|---------|-------|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 21 | 26.9% | 554.2 | 31.6% |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21 | 26.9% | 281.36 | 16.0% |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 18 | 23.1% | 557.5 | 31.8% |
|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 13 | 16.7% | 261.9 | 14.9% |
|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5 | 6.4% | 99.4 | 5.7% |
| 계 | 78 | | 1754.36 | |

제3장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연구동향

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⁵⁾⁶⁾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5%,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30.5%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이 3.3%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취업자 비율이 국민 일반보다 월등히 높고, 40대 이하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이 국민 일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취업자의 근로 현황을 살펴보면, 직종은 단순노무가 27.9%로 국민 일반(13.0%)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17.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3.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2%)도 국민 일반 보다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0.7%, 사무종사자는 6.0%로 국민 일반에 비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비율은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11.1%, 무급가족종사자 6.6% 등 비임금근로자가 17.7%이며, 상용근로자가 42.3%, 임시근로자 21.4%, 일용근로자 18.5%를 차지하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상용직 비중은 월등히 낮고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은 훨씬 높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은 현저히 낮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더 높은 등 전반적으로 종사상 지위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현황과 종사상 지위는 이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월평균 임금은 150~200만원 미만이 25.3%, 100~150

5) 여성가족부(2019c).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6)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이다. 2009년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원 미만이 22.3%로 47.6%의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월평균 100~2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이 200~300만원인 경우는 20.0%, 300만 원 이상은 99%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5.8%, 임금 또는 보수가 없는 경우도 6.6%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50만원 미만 소득층은 감소한데 비해, 150만 원 이상 소득층은 증가했다. 그러나 350만 원 이상 소득층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표 3-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임금수준

(단위 : %)

| 구분 | 2015년 | 2018년 | |
|------------------|-------|-------|------|
| | | | |
| 임금 또는 보수 없음 | 5.9 | 6.6 | 6.6 |
| 50만원 미만 | 5.8 | 3.8 | |
| 50 ~ 100만원 미만 | 18.8 | 12.0 | 15.8 |
|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30.8 | 22.3 | |
|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19.2 | 25.3 | 47.6 |
| 200만원 ~ 250만원 미만 | 8.5 | 13.4 | |
| 250만원 ~ 300만원 미만 | 4.6 | 6.6 | 20.0 |
| 300만원 ~ 350만원 미만 | 2.3 | 3.5 | |
| 350만원 ~ 400만원 미만 | 1.2 | 1.9 | 5.4 |
| 400만원 ~ 450만원 미만 | 0.9 | 1.2 | |
| 450만원 ~ 500만원 미만 | 0.5 | 1.0 | 2.2 |
| 500만원 이상 | 1.6 | 2.3 | 2.3 |

*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편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⁷⁾에 대해서는 적은 임금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12.7%), 그 다음이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9.6%), 긴 노동시간(9.5%), 힘들고 위험한 일(7.9%)의 순서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안전문제 등 노동조건 뿐 아니라 이민자로서의 언어 적응문제도 취업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이들도 3.6%로 나타났다.

7) 42.8%의 응답자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3-2〉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

| 구분 | 2015년 | 2018년 | 증감 |
|---------------|-------|-------|------|
| 어려움 없음 | 39.6 | 42.8 | 3.2 |
| 적은 임금 | 14.7 | 12.7 | -2.0 |
|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 | 10.1 | 9.6 | -0.5 |
| 긴 노동시간 | 11.0 | 9.5 | -1.5 |
| 힘들고 위험한 일 | 6.8 | 7.9 | 1.1 |
| 집안일 병행 어려움 | 5.7 | 5.9 | 0.2 |
| 자녀양육의 어려움 | 5.2 | 4.8 | -0.4 |
| 외국사람에 대한 차별 | 3.9 | 3.6 | -0.3 |
| 직장상사, 동료와의 문제 | 2.0 | 1.7 | -0.3 |
| 기타 | 1.0 | 1.5 | 0.5 |
| 계 | 100.0 | 100.0 | |

*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현황 및 경제활동 현황

1) 인구현황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104,854명으로, 주민등록인 구대비 4.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⁸⁾, 주민등록인구대비로는 전국1위 수준이다. 충청남도는 외국인주민수가 10만명 이상이고, 인구 대비 4%이상인 외국인밀집지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⁹⁾.

8) 경기도가 603,6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시에 413,943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상남도(116,379명)이다(다음의 표 참조).

9) 외국인주민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동시에 인구대비 4% 이상인 시도는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 세 곳이다.

〈표 3-3〉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총인구 | 외국인 주민 | | |
|---------|------------|------------------|---------|---------|
| | | 소 계 (비율) | 남자 | 여자 |
| 전국 | 51,422,507 | 1,861,084 (3.6%) | 989,286 | 871,798 |
| 서울특별시 | 9,741,871 | 413,943 (4.2%) | 192,250 | 221,693 |
| 부산광역시 | 3,416,918 | 64,145 (1.9%) | 33,841 | 30,304 |
| 대구광역시 | 2,453,041 | 42,506 (1.7%) | 22,137 | 20,369 |
| 인천광역시 | 2,925,967 | 104,441 (3.6%) | 55,363 | 49,078 |
| 광주광역시 | 1,496,172 | 34,412 (2.3%) | 17,661 | 16,751 |
| 대전광역시 | 1,525,849 | 28,404 (1.9%) | 12,647 | 15,757 |
| 울산광역시 | 1,157,077 | 34,373 (3.0%) | 19,260 | 15,113 |
| 세종특별자치시 | 276,589 | 6,761 (2.4%) | 3,683 | 3,078 |
| 경기도 | 12,851,601 | 603,609 (4.7%) | 336,239 | 267,370 |
| 강원도 | 1,521,386 | 31,123 (2.0%) | 15,007 | 16,116 |
| 충청북도 | 1,611,009 | 61,246 (3.8%) | 34,907 | 26,339 |
| 충청남도 | 2,162,426 | 104,854 (4.8%) | 59,560 | 45,294 |
| 전라북도 | 1,826,174 | 49,840 (2.7%) | 24,301 | 25,539 |
| 전라남도 | 1,792,319 | 55,504 (3.1%) | 29,444 | 26,060 |
| 경상북도 | 2,677,058 | 83,898 (3.1%) | 47,540 | 36,358 |
| 경상남도 | 3,345,293 | 116,379 (3.5%) | 71,644 | 44,735 |
| 제주특별자치도 | 641,757 | 25,646 (4.0%) | 13,802 | 11,844 |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기준년도 : 2017년 11월 1일 기준 행안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표 3-4〉 시도별 외국인주민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 구분 | 인구 대비 4%이상 | 인구 대비 3%이상 | 인구 대비 2%이상 | 인구 대비 2%미만 |
|--------------------|----------------|----------------|----------------|---------------|
| 외국인주민 수 10만명 이상 | 경기 서울 충남 | 경남 인천 | | |
| 외국인주민 수 5만명 이상 | | 경북 충북 전남 | | 부산 |
| 외국인주민 수 3만명 이상 | | 울산 | 전북 광주 강원 | 대구 |
| 외국인주민 수 3만명 미만 | 제주 | | 세종 | 대전 |

충청남도 시·군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수는 천안시가 30,379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25,935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당진시 8,929명, 서산시 6,894명, 논산시 6,384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구 대비 비율로는 아산시가 7.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금산군(5.5%), 당진시(5.3%), 논산시(5.2%)가 5%대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외국인주민 수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으나 인구대비 비율은 4.6%로서 다섯 번째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 명)

| | 인구 | 외국인주민 수 | 인구 대비 비율 |
|-----|---------|---------|----------|
| 천안시 | 656,294 | 30,379 | 4.6% |
| 아산시 | 338,473 | 25,935 | 7.7% |
| 당진시 | 168,508 | 8,929 | 5.3% |
| 서산시 | 171,364 | 6,894 | 4.0% |
| 논산시 | 123,774 | 6,384 | 5.2% |

| | | | |
|------|-----------|---------|------|
| 보령시 | 100,922 | 4,215 | 4.2% |
| 홍성군 | 103,048 | 3,641 | 3.5% |
| 공주시 | 111,017 | 3,607 | 3.2% |
| 예산군 | 78,678 | 3,603 | 4.6% |
| 금산군 | 55,672 | 3,085 | 5.5% |
| 부여군 | 67,028 | 2,550 | 3.8% |
| 서천군 | 53,321 | 2,056 | 3.9% |
| 태안군 | 61,170 | 2,020 | 3.3% |
| 청양군 | 31,299 | 1,158 | 3.7% |
| 계룡시 | 41,858 | 398 | 1.0% |
| 충청남도 | 2,162,426 | 104,854 | 100% |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기준년도 : 2017년 11월 1일 기준 행안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표 3-6〉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 인구 대비 비율 외국인주민 수 | 7% 이상 | 5% 이상 | 4% 이상 | 3% 이상 | 3% 미만 |
|---------------------|-------|------------|------------|--|-------|
| 1만명 이상 | 아산시 | | 천안시 | | |
| 5천명 이상 | | 당진시 논산시 | 서산시 | | |
| 1천명 이상 | | 금산군 | 보령시 예산군 | 홍성군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청양군 | |
| 1천명 미만 | | | | | 계룡시 |

2)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이용자 취업 현황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의 이용자수는 총 1,450명이고, 이중 약 5.2%인 75명이 취업을 하였다.

〈표 3-7〉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이용자 수 및 취업자 수

(단위 : 명, %)

| | 이용자 수 | | | | | 취업자 수 | 취업률 |
|------|---------------------------|-----------|------------|------------|-------|----------|-------|
| |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포함) | 취업처 연계 | 새일센터 연계 | 고용센터 연계 | 계 | | |
| 천안시 | 1,192 | | | | 1,192 | 2 | 0.2 |
| 아산시 | 53 | 4 | 1 | 12 | 70 | 20 | 28.6 |
| 당진시 | | | | | 0 | - | - |
| 서산시 | 52 | 6 | | 2 | 60 | 13 | 21.7 |
| 논산시 | 19 | | | | 19 | 1 | 5.3 |
| 보령시 | 13 | 2 | | | 15 | 3 | 20.0 |
| 홍성군 | 21 | | | | 21 | 13 | 61.9 |
| 공주시 | 12 | | | | 12 | 0 | 0.0 |
| 예산군 | | | | | 0 | - | - |
| 금산군 | 12 | | | | 12 | 0 | 0.0 |
| 부여군 | 14 | | | | 14 | 6 | 42.9 |
| 서천군 | | 7 | | 1 | 8 | 7 | 87.5 |
| 태안군 | 10 | | | | 10 | 10 | 100.0 |
| 청양군 | 17 | | | | 17 | 0 | 0.0 |
| 계룡시 | | | | | 0 | - | - |
| 충청남도 | 1,415 | 19 | 1 | 15 | 1,450 | 75 | 5.2 |

* 자료 : 홍성군 건간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한편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36명(48.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25명(33.3%)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13명(17.3%)이고, 사무종사자는 1명(1.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28명, 38.4%), 상용근로자(23명, 31.5%), 임시근로자(22명, 30.1%)의 비율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8〉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취업자의 직업별·종사상 지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인원 | 비율 |
|--------|--------------|----|
| 직업별 현황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36 |
| | 사무 종사자 | 1 |
| | 서비스 종사자 | 25 |
| | 단순노무 종사자 | 13 |
| | 계 | 75 |
|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 23 |
| | 임시근로자 | 22 |
| | 일용근로자 | 28 |
| | 계 | 73 |

* 자료 : 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3.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성향숙(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일 지향에 관한 연구에서 일 지향성을 생계유지형, 열망대체형, 가족행복추구형, 자아확장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취업지원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계유지형’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의 확충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 일자리 지원정책의 경우, 오히려 빈곤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열망대체형’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탈빈곤과 자녀교육(양육)을 위한 인적자본 강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들

에 대한 우선적 교육지원서비스와 결혼이민여성이 속한 계층과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단계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행복추구형’과 ‘자아확장형’ 결혼이민여성과 같이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고,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경우에는 결혼이민여성을 한국 사회의 중요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3-9〉 결혼이민여성의 일 지향성 유형

| 유형 | 설명 |
|---------|--|
| 생계유지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목적과 의미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있음 ◦ 평균 월수입은 80~90만원 정도 ◦ 남편은 무직이거나 일용직 |
| 열망대체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의 성공을 통하여 자신의 열망을 추구 ◦ 생계유지형과 유사한 경제적 조건(평균 가족원 수 5명) ◦ 자신의 헌신적 노동을 통하여 자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유형 |
| 가족행복추구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자신을 중심에 둠 ◦ 직업은 가족의 행복추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 ◦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과 남편의 직업적 안정성이 높음 |
| 자아확장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행복을 넘어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일하는 유형 ◦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의 안정성 및 처우가 나은 편임 |

* 성향숙(2012)의 논문 재정리

이러한 성향숙(2012)의 연구는 유형구분을 통하여, 유형에 따른 정책제안을 모색한 연구로서의 의의는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생계유지형’과 ‘열망대체형’에 대하여 취업 및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김복태·이승현(2015)은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및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지역에 따른 특화된 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과정 전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주와의 문제나 이주여성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 임금체불,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문제, 퇴사이후의 재취업 교육 및 알선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김복태·이승현, 2015). 또한 결혼이민여성에게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수요를 갖고 있는 정부·민간·사회적 경제 부문의 구인업체를 연결하는 협업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영혜(2011)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사회참여의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일(취업, 일자리)의 의미가 단순히 경제적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사회참여의 의미와 일을 통한 보람에 있음을 보였다¹⁰⁾. 그러나 구체적인 일(취업, 일자리)과 관련한 정책제안에 있어서 노동 공급자의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지원, 즉 자국 언어능력을 이용한 일자리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과연 현실적인 적합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성호·변수정(2015)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본,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 한국 생활 요인 등이 그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출신국 가별로 고용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을 발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여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서 보편적·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결혼이민여성의 유형 및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성호·변수정(2015)이 발견한 출신국가별 양극화 현상은 본 연구의 대상인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지원정책 연구에 함의를 제공한다. 즉, 다문화 이주여성 일반이 아닌,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가가 아닌, 경제적 취약계층이 실제로 노동현장의 수요

10) 한편, 조성호·변수정(2015)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접하게 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강희영·이해웅·이화용(2016)은 서울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 관련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수요자(노동의 공급자)의 관점에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충남지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는 우복남·배지연(2016)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충남지역에서 현재 직업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약 절반(47.5%)이 단순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¹¹⁾. 이에 비하여, 기능종사자(2.9%), 사무종사자(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9.7%), 임직원 및 관리자(1.1%) 직업의 합계는 약 17.5%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직업이 있는 결혼이주여성(387명) 중 약 절반이 180명(46.5%)이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임을 보이고 있다.

〈표 3-10〉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직종별 분포

| 구분 | 빈도 | % | 빈도 | % | |
|--------------|-------------|------|------|------|-----|
| 해당없음(직업이 없다) | 277 | 41.7 | | | |
| 현재 직업 있음 | 소 계 | 387 | 58.3 | 387 | 100 |
| | 상용직 | | 120 | 31.0 | |
| | 임시직 | | 99 | 25.6 | |
| | 일용직 | | 62 | 16.0 | |
| |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 | 38 | 9.8 | |
|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 | | 49 | 12.7 | |
| | 무급가족종사자 | | 19 | 4.9 | |
| 합 계 | 664 | 100 | | | |

소득에 있어서, 일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을 통한 월평균 소득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약 67%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

11) 보다 구체적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17.8%,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15.5%,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은 14.2%로 나타났다.

이 직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36.2%), ‘낮은 보수(임금)’(12.8%), ‘자녀양육’과 ‘집안일과 병행하기 어려움’이 각각 8.8%로 나타났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8%로 나타났다.

우복남·배지연(2016)은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의 체계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농림어업 전문역량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가구 소득,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에 비해 현재의 관련 사업 만족도가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현재 다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사업인 소양교육 및 취업연계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즉, 노동수요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종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노동의 수요자 관점과 공급자 관점을 동시에 살펴보는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이 요구된다.

제4장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관한 인식조사와 쟁점

1. 표본의 특성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인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조하였다.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4회의 면접조사가 진행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면접조사는 9월 2일, 9월 18일, 11월 16일에 진행이 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에 대한 면접조사는 11월 3일에 진행이 되었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가능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과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접하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면접대상이 되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장벽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하여 다문화지원센터의 이중언어담당 선생님, 통·번역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면접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질문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하여 면접대상자가 언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면접대상자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변의 친구, 또는 다른 분의 경우에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한국 입국시기는 다양하였다. 먼저 출신국을 살펴보면, 필리핀 2명, 중국 3명, 베트남 6명, 카자흐스탄(및 러시아) 3명, 태국 1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한국에 입국한지 25년이 되는 경우(1994년 입국)도 있었고, 한국에 입국한지 1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조사에 응한 15명의 평균적인 한국 거주기간은 약 10년 11개월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경우, 최근에 입국한 3명(2017년과 2018년 입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접조사에 응한 응답자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약 1.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가장 많은 여성의 경우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배우자 및 자녀이외에 시부모(시어머니만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5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15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면접조사를 실시하던 당일을 기준으로 취업을 한 사람은 10명이었다. 취업을 한 10명 중 절반인 5명은 언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양봉업, 축산업과 같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 여성이 2명, 식당운영을 포함하여 식당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2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이 있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남편과 함께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는 자신의 모국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였다.

〈표 4-1〉 면접 대상자 현황

| 구분 연번 | 모국 | 한국 입국년도 | 현재 직업 (하는일) | 이전 직업 (했던 일) | 가족관계 |
|----------|-------|------------|---------------------------|-----------------|----------------|
| 1 | 필리핀 | 2007 | 학원 강사(언어) | 주부 | 배우자, 자녀3 |
| 2 | 필리핀 | 2008 | 양봉업 | 주부 | 배우자, 자녀5 |
| 3 | 중국 | 2001 | 이중언어 강사 | 주부 | 배우자, 자녀4 |
| 4 | 중국 | 2000 | 이중언어 강사 | 주부 | 배우자, 자녀2 |
| 5 | 중국 | 1994 | 식당 운영 | 식당 보조 | 배우자, 자녀1 |
| 6 | 베트남 | 2010 | 주부 | 회사원 | 자녀4 |
| 7 | 베트남 | 2008 | 이중언어 코치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회사원 | 시부모, 배우자, 자녀1 |
| 8 | 베트남 | 2008 | 통번역사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부 | 시어머니, 배우자, 자녀3 |
| 9 | 베트남 | 2017 | 주부 | 주부 | 시부모, 배우자 |
| 10 | 베트남 | 2018 | 주부 | 단순 노동 | 배우자 |
| 11 | 베트남 | 2018 | 주부 | 회사원 | 시부모, 배우자 |
| 12 | 카자흐스탄 | 2007 | 식당 종업원 | 주부 | 시부모, 배우자, 자녀2 |
| 13 | 카자흐스탄 | 2000 | 사회복지사 | 이중언어 강사 | 배우자, 자녀1 |
| 14 | 러시아 | 2018 | 주부 | 주부 | 배우자, 자녀2 |
| 15 | 태국 | 2008 | 축산업 | 주부 | 배우자, 자녀1 |

질문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 전, 취업 중, 퇴직 후로 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취업동기, 취업업종 및 기간,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등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도 파악하였다.

2. 취업 전 단계

1) 취업동기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소득분위 하위 2~3분위에 속하며, 남편과의 나이차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면접대상자의 경우, 본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하여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일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험삼아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렇게 경제적 이유 이외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험삼아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입국한지 2년 4개월이 된 결혼이주여성으로, 남편의 수입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입국한지 약 10년이 된 결혼이주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서울에서 7년을 생활하면서 구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였고, 충남에 거주한지는 3년이 되고 있다. 본인은 동네에서 농사일을 부정기적으로 돋고 있으며,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경제적 이유 이외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안정된 경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일자리 소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일자리는 주로 같은 나라의 결혼이주여성들끼리 서로 알음 알음 소개하여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인과의 네트워크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장 중요한 구직 통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구직사이트, 공공 기관의 구직 통로(다문화지원센터, 새일센터 등)를 통하여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는 사설직업소개기관을 통한 구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가족부(2019)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와는 차별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9)에서는 약 7.1%의 결 혼이민자귀화자가 사설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구직을 한다고 조사가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에 한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설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응답, 사설직업소개기관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응답 등 다양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사설직업소개기관을 통할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사설직업소개기관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힘들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 통하여 찾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설직업소개기관을) 이용했는지. 저가 올 때는 주변에서 다 사람들을 통해서 찾고 있었어요.

결혼이주여성의 구직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사항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구직 관련정보의 질(質)이었다. 일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말이 서툰 관계로 구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이들이 주로 모국 결혼이주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직정보를 습득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인에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

첫째는 거짓정보의 유통이었다. A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SNS를 통하여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 SNS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구직정보도 이곳을 통하여 공유가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 SNS에 거짓정보들이 올라온다는 것이다. SNS의 성격상 이러한 거짓정보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구직관련정보를 SNS를 통하여 얻어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SNS에 일자리(정보)가 올라와요. (예를 들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 일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고, 돈은 얼마 준다. 그런데 직접 가보면 힘들어요(올라온 정보와 달라요). 일하는 시간도 많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작고).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요. 한 달도 일하지 못해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SNS에 올라오는 거에 가끔 사기가 있어요. 어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소개비로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돈만 받고 없어요.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주변에 많아요.... 진짜도 있고, 사기도 있으니까 구분하기 힘들어요. 당장 돈 벌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모국 결혼이주여성들끼리 알음알음 소개를 하여 구직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끼리끼리’ 현상이다. 물론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 그렇지만 취업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한 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친구끼리 소개시켜줘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자리가 비면, 주변에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제가 이전에 일했던 공장은 2014년에 저 혼자였는데, 팀장이 (일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출신이 많아요. 아이스크림 공장이어서 많이 있을 때는 열 명도 더 있어요.

결혼이주여성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어서 한국어가 늘지를 않아요. 오히려 직장에 나가면서 한국어가 줄어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나라말로만 이야기하니까. 한국어가 늘어야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일자리에만 머물게 되더라고요. 일단 수입이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결혼이주여성의 남편).

3) 취업업종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15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면접조사를 실시하던 당일을 기준으로 취업을 한 사람은 10명이었다. 이들의 취업업종을 살펴보면 언어와 관련된 업종(학원 강사, 방과후 언어교육 강사, 이중언어 담당, 다문화강사 포함)에서 일하는 경우가 5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명(양봉업, 축산업), 요식업 2명, 다문화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먼저 면접대상자들 중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업종에 취업한 다문화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비중이 나타나는 것을 전체 다문화이주여성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 2명이 면접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면접과정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면접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뒤를 이어 주변의 친구 또는 다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취업업종에 관해서도 “○○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요?”를 묻고 난 뒤, “주변의 친구,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대다수의 면접대상자의 경우, 주변의 친구 또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은 공장, 식당(시간제 근무 포함), 농장 등의 장소에서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들만 보고 많은 수의 다문화이주여성이 언어와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¹²⁾.

10명이면 8명 정도가 일을 해요. 주로 가게나 공장에서 일해요. 식당 같은 데는 한국어를 해야 하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12)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도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단순노무자가 27.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0.7%, 사무종사자는 6.0%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8.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여성 일반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 23.2%와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모습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출신국가의 음식과 관련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정책 2019년 시행계획에도 하나의 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다¹³⁾. 식당은 운영하는 장점으로는 경쟁력을 꼽았다. 즉, 자신의 국가에서 특화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한국음식점과는 차별화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게를 중심으로 자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음식점의 준비과정 및 운영에 있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이야기하였다. 먼저 어려움으로는 음식점을 내는 과정에서 허가 및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허가 및 행정절차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관련 행정기관에 허가 및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방문을 하면 일단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언어가 서로 잘 통하지 않다보니 공무원들도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충청남도로 이사를 와서 다시 식당을 운영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음식점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서류 및 행정절차 일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사를 고용하여 처리하였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행정기관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음식점 창업과 관련된 행정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일정 수 이상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공서에 자신들과 같은 외국인들의 민원 또는 행정서류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주민을 고용하거나, 지역단위로 하여 외국인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⁴⁾.

13)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정책 2019년 시행계획에는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문화 음식점 "아시안-쿡" 운영(서산시)이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14) 물론 관공서에 이중(또는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언어 사용자의 행정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구직 시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언어장벽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일자리 관련정보의 부족도 큰 어려움이라고 다수의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소수의견으로 일자리 시간이 맞지 않음, 자녀 돌봄 문제 등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부(2019)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다. 여성가족부(2019)의 경우, 구직 시 어려움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43.0%), 근처에 일자리가 없는 점(34.0%), 일자리 관련 정보 부족 및 취업 방법을 모르는 문제(25.8%), 자녀나 가족 돌봄 문제(23.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16.7%), 한국에서의 경력이 부족해서(15.6%)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모국에서의 경력·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도 각각 8.2%,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언어 문제가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장 기본적이고 큰 문제였다. 취업과 관련하여 언어의 문제는 구직과정에서 시작하여 취업 중 그리고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고려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반면에 근로조건은 여성가족부(2019)의 조사연구와는 다소 다르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필요의 요구가 근로의 권리에 대한 요구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제가 보기에도 첫째도 한국어, 둘째도 한국어, 셋째도 한국어예요. 확실히 한국어를 잘하면 일자리의 선택폭이 넓어요.

근로조건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일단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녀들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한정하여 일자리를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오전 8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곳을 원해요. 공장처럼 매일 8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곳이요. 아침 8시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 후 찾을 수 있으니까요.

3. 취업 단계

1) 일자리 현장에서 어려운 점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구직 시의 어려움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차별문제, 힘든 일 등으로 나타났다. 적은 임금에 대한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의 문제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취직을 하고나서 일자리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였다. 그리고 언어문제와 함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일자리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어요. 있다면 언어문제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문제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싫어해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싸우기까지 해요.

2) 계약 및 근로조건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최저임금, 추가근무수당과 같이 자신들의 근로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필요의 요구가 근로의 권리에 대한 요구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지만 이들에게는 그 정도의 소득도 가계(본국에 대한 송금도 포함)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 국가의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충분히 많은 금액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존재했다.

이들이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통로가 부족한 것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열악한 근로의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현실도 정보의 습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다문화센터 및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근로의 권리 및 근로환경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센터나 기관의 홍보나 교육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소통하는 SNS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근로계약서요? 잘 몰라요. 일단 일해야 하니까. 한국어도 서툴고.

최저임금은 못 받아요. (지금 제 주변에)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월 180만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자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요. 다른데 찾아봐도 (근무여건이 좋은데는) 일자리가 없는 거 같아서.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인을 해요. 그래서 연차 없어요, 휴가 없어요, 추가수당 없어요.

4. 퇴직 후 단계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출산,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일을 그만두게 된 뒤로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의외의 사실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기계발에 투입되는 시간·노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계약 및 근로조건’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경제적 필요의 요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당장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기계발에 시간과 돈은 투입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한국어만 잘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게 힘들어요. 한국어가 잘 안 늘어요. 공장에서는 우리끼리 우리말만 쓰거든요.

저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나고, 힘들어요.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모두에게서 제시되었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한국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좀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한국어 교육이 너무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량도 많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가 중요한데, 도착하고 한국어를 제대로 충분히 배우지 않으니. 그 다음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취직을 하면 뭐하냐고요. 말이 안 통하니,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곳에서 일하게 되고, 한국어도 안 늘고, 다시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곳에서 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결혼이주여성의 남편).

제5장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 취업정책 추진방안

1.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향성

결혼이주여성 가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부부간 연령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현재 초기수준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가정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취업지원의 혜택이 지역사회로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원이라 함은 경제적인 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통합 관점의 환원을 의미한다. 취업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여유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한국어임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인 한국어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취업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노동의 권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추진 전략

1) 단계별 지원 정책 마련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 이전, 취업 중, 퇴직 후에 요구되는 정책의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취업 이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약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기 계발과 인적자원 개발은 더울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다시 취약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취업 전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구직정보의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취업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체계적인 구직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이 구축해 놓은 SNS에 신뢰할 수 있는 구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 검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직업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물론, 단순 노동직이 아닌 경우, 어떠한 기술·자격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자격 등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 전 단계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직업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낮은 한국어능력은 취업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직장 내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과 기본적인 직업 교육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 단계에서는 계약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저임금을 받고 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선뜻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권의 관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계약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 이후에는 이들의 인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퇴직 이후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의 인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이 빠른 시간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동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기본적 교육 강화 및 보육제도의 개선

본 연구의 면접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국어와 보육문제임을 고려할 때, 한국어교육 강화와 보육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한국어교육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직업역량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인 교육 강화에는 남편 및 가족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편 및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활방식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취업교육에 대한 협조, 가사 노동 분담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은 남편이나 가족을 위한 집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

보육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보육정책과 맞물려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의 경우, 지역 내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전문역량 강화

충남의 경우,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의 농업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하지 않고 열악하다.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 노인 돌봄 도우미, 농촌관광 및 문화행사 도우미 등을 생각할 수 있다(이규용, 2012).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영농기술을 전수하여 취업과 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영농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취업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희영·이해웅·이화용(2016). 결혼이민여성 취업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고혜원(2008). 여성 결혼 이민자의 취업지원 체계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수연·양성은(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3-150.
- 공은숙(2009).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 :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지인문학, 2: 27~49.
- 김병숙·안윤정·송혜령(2010).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5(2): 235-258
- 김복태·이승현(2015).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혜(2011). 결혼이주여성의 일의 세계와 일자리 창출의 방향. 경기여성재단
- 김용현·김홍주(2017). 충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실태와 취업지원방안. 충남연구원.
- 김정희·최은수(2012). 다문화출신 이주자의 한국사회 직업획득과정에서 제공되는 평생 교육 탐색. 평생교육 HRD연구, 8(2): 79-103.
- 김태원·김유리(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 323~362.
-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269-302.
- 박재규(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GRI연구 논총, 15(1): 5-33.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한건수·정경숙·박수미·조진경·박혜정(201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성향숙(2012). 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일 지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연구, 39(4): 331-355.
- 심인선(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5: 36-45.
- 양소영·여병창(2011).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한국화교의 사회복지 실태 고찰. 중국인문 과학, 49: 441-460.
- 양인숙·민무숙(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a). 2019년 가족사업안내(I).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b). 2019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c).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우복남·배지연(2016).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원숙연(2012). Old or New? 인종주의의 다차원성과 영향력의 차별성 : 미국의 경험을 통한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50(4): 105-134.
- 유길상·이규용·설동훈·박성재(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보건복지부.
- 이규용·박성재·강혜정(2011). 결혼이민자의 가정과 노동시장 통합.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희·이수분(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인적자원연구, 20(1): 141-159.
- 이태정·이용수·신현구·김명수(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
- 임형백(2009).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1): 161-185.
- 임형백·이성우·강동우·김미영(2009).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6(4): 743-773.

- 정명주(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275~295.
- 정장엽·정순관(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 조성호·변수정(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15(2): 25-55.
- 조세현(2012).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최승호(2010). 충북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집 필자 ■

연구책임 ·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웅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연구 2019-18 · 충청남도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진영·최웅선·성태규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9년 12월 31일 / 발행 · 201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86(사회통합연구실), 041-840-1114(대표)/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07-4-03350

<http://www.cni.re.kr>

© 2019.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